

홍콩지사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2022년 6월)

I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홍콩

□ 3개 국가의 일부 지역 가금류 및 가금류 알 제품 수입 잠정 중단 (6월 기준)

- 홍콩 식품안전센터는 2022년 6월, 공중 보건 보호를 위해 3개 국가의 일부 지역에서 가금류 및 가금류 알 제품 수입을 잠정 중단키로 했으며 사유는 아래와 같음

국가	지역	내용	비고
캐나다	Township of Langley of British Columbia Province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H5N1)	(2022년 3월까지) 對 캐나다 냉동가금육 수입량 : 4톤
영국	Shetland Islands of Scotland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H5N1)	(2022년 3월까지) 對 영국 냉장/냉동가금육 수입량 : 420톤 가금류 알 : 9만개
베트남	Dong Nai Province, Binh Dinh Province, Vinh Phuc Province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H5N1)	(2022년 3월까지) 對 베트남 가금류 알 : 866만개

2. 대만

□ 개정 공고 「잔류농약 허용기준 제3조 일람표」 [5.25]

- 공고 일자 : 2022년 5월 25일
- 개정 근거 : 식품안전위생관리법(食品安全衛生管理法) 제15조 제1, 2항(項)
- 주요 내용

- 잔류농약 허용기준 제3조 클로피리포스의 32가지 잔류물 허용 기준을 삭제함

식용작물의 잔류농약 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 안전 위생 관리법」 제15조 제5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류농약 함량이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가공·준비·포장·운송·저장·판매·수입·수출·증정 또는 상품진열을 할 수 없으며 동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잔류농약 허용량의 기준은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 함.

본 개정 중점내용은 잔류농약 허용기준 클로피리포스 (Chlorpyrifos, 陶斯松)의 싼채소류, 감귤, 호두, 바닐라, 후추, 콩 등 32가지의 잔류 허용 기준을 삭제하는 것임

< 「잔류농약 허용기준 제3조 일람표」 개정 ('22.05.25) >

- 개정공고 「잔류농약 허용기준 제3조 일람표」 수정

修正農藥殘留容許量標準, 加強食品殘留農藥管理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cid=4&id=t600992>

1. 홍콩

□ 4월 식품 안전 보고서 발표 (5.31) * 5월 보고서는 6월 30일 발표 예정

○ 2022년 4월, 약 3,500개의 식품 샘플 조사 결과 총 2건의 위반사례 발생

위반 사유	건수	샘플 종류
잔류농약 초과 검출	2건	상추 1종, 케일 1종

* 출처 : 홍콩식품 안전센터(www.cfs.gov.hk)

○ 미생물 테스트를 위해 약 700개, 화학적 테스트를 위해 약 2,800개 샘플을 수집 · 시험함

- 미생물 테스트는 병원균 및 위생지표를 다루며, 화학 테스트에는 잔류 농약, 방부제, 금속 오염, 식용색소, 동물성 의약품 잔류물 등이 있음
- 4월에 시행된 시험에 대한 샘플의 품목별 수는 채소 및 과일 1,400개, 곡물 및 곡물 제품 200개, 육류 · 가공육 및 가공제품 300개, 유제품 및 냉동 당과 제품 700개, 수산물 및 가공식품 300개, 음료 · 베이커리류 및 스낵 600개임

□ 5월 영양 성분표기 및 알레르겐 표기에 대한 적합성 검사 결과 월간보고 (6.23)

○ 영양 성분 표기

- 열량과 주요 7대 영양소인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산, 나트륨, 당류의 함유량은 반드시 정확하게 표기해야 함
- 2022년 5월, 20개의 식품 샘플에 대한 영양 성분 표기 조사 결과 위반 사례 2건 발생

일자	제품	문제사유	라벨링 표기	테스트 결과
5월	유기농 바나나 복숭아 우유팝 250g (Organic Milk Pap Banana Peach)	비타민D	7mg/100g	4.9mg/100g
5월	유기농 바나나 복숭아 우유팝 250g (Organic Milk Pap Banana Peach)	비타민D	7mg/100g	4.5mg/100g

* 출처 : 홍콩식품 안전센터(www.cfs.gov.hk)

○ 알레르겐 표기

- 위반사례 없음.
-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8가지(글루텐을 포함하는 곡류, 갑각류, 계란, 생선, 우유 및 유제품(락토즈 포함), 콩 및 땅콩, 견과류, 아황산염 10ppm 이상) 성분을 포함하는 경우 포장 식품의 성분 목록에 표기해야 함

2 대만

□ 개정 공고 「포장제품의 영양성분표기 규정」 수정 사항 [6.23]

○ 공고 일자 : 2022년 6월 23일

○ 개정 근거 : 식품안전위생관리법(食品安全衛生管理法) 제22조 제3항(項)

○ 주요 내용

- (1) 영양성분표기 용어 정의를 수정함
- (2) 정제 및 캡슐 식품의 영양성분 및 단위를 표시해야 함(예를 들어 알, 덩어리 등)
- (3) 아미노산 단위를 그램이나 밀리그램으로 표시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의 표시방법, 수분 보충식품의 표시방법 등 수정함
- (4) 새로운 영양성분 표시는 매 섭취량 혹은 매 그램(혹은 ml) 단위로 일관성되게 표시하도록 규정함
- (5) 칼로리와 영양소는 '0' 으로 표시 규정 수정함
- (6) 정제 및 캡슐식품은 1인분의 단위를 표시하고 열량, 영양소 등 표시기준을 수정함
제품의 검사 및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본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됨. 제품의 품명 표기가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부실, 과장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자는 해당 법에 따른 관련 규정에 의함 (식안법 제22조에 의하며 NTD3만~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제28조에 의하여 최고 NTD400만 원 벌금에 처함)

< 「포장제품의 영양성분표시 규정」 개정 ('22.06.23) >

- 개정공고 「포장제품의 영양성분표시 규정」

修正「包裝食品營養標示應遵行事項」部分規定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cid=4&id=t601057>

III

통관 문제 사례 관련

1. 홍콩 통관 거부사례 [6월] [2022.06.01~ 2022.06.24. 현재 기준]

○ 특이 사항 없음

2. 대만 통관 거부사례 [6월] [2022.06.01~ 2022.06.24. 현재 기준]

○ 특이 사항 없음